포항시 읍·면·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5년 2월 11일
자치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5년 1월 23일

나. 회부일자 : 2025년 1월 23일

다. 상정일자

❍ 제321회 포항시의회(임시회)

•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(2025. 2. 11.) 상정·질의답변·토론·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 : 배성호 총무새마을과장)

가. 개정이유

❍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시행사의 관할구역 경계조정 신청에 따라 행정구역경계를 조정하여 주민편의 및 행정효율성 제고하고, 포항영일만일반산업단지 내 법정리 간 불합리한 경계조정에 대한 요청에 따라 흥해읍 용한리 · 곡강리 · 죽천리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추진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❍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조성사업 內 : (흥해읍) 이인리 ↔ (흥해읍) 대련리

• 흥해읍 이인리 69필지【60,826.9㎡】 ⇒ 대련리에 편입

• 흥해읍 대련리 2필지【 1,634.9㎡】 ⇒ 이인리에 편입

❍ 포항영일만일반산업단지 內

• 흥해읍 곡강리 4필지【33,233.8㎡】 ⇒ 용한리에 편입

• 흥해읍 죽천리 2필지【 8,610.3㎡】 ⇒ 용한리에 편입

• 흥해읍 곡강리 2필지【47,193.2㎡】 ⇒ 죽천리에 편입

• 흥해읍 죽천리 1필지【15,357.6㎡】 ⇒ 곡강리에 편입

다. 관련법령

❍ 「지방자치법」 제7조(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·면·동 등의 명칭과 구역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: 박종율)

❍ 본 개정조례안은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관할구역 경계조정 신청과 포항영일만일반산업단지 내 법정리간 불합리한 경계조정에 대한 요청에 따라 행정구역경계를 조정하여 주민편의 및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,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의 요지 : 생 략

5. 토론의 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